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저항권 사상

노데라 히로부미(野寺博文)*

저항권이란 국가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교(信敎)의 자유를 유린하는 등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다는 사상인데, 이 사상은 미국 독립 선언이나 프랑스혁명을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저항사상의 원류부터 시작하여 16세기 종교 개혁, 그 중에서도 저항권 사상을 명확히 제창한 루터, 그리고 그것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칼빈, 그리고 프랑스란 특수한 상황에서 저항권 사상을 독자적으로 전개시킨 칼빈의 제자인 베자의 저항권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저항사상의 원류

저항의 원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라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가리키신 주 예수님의 말씀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 5:29)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 권위보다도 하나님께의 권위에 대한 절대 복종을 말한 사도 베드로의 설

* 일본 북해도에서 출생하여 니이가마(新潟)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동경기독신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고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교회사를 전공하여 신학석사(Th. M.) 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동경 아카바네(赤羽)성서교회에서 목회중임.

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저항의 문제는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롬 13:1)라고 위정자에게의 복종을 가리킨 바울의 말씀과의 관계에서도 논하게 되고, 이 세가지의 말씀이 가리킨 한계선 안에서 생각되어 왔다. 이 문제는 광의로는 교회와 국가의 문제이고 협의로는 저항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¹⁾

저항권의 개념은 중세 유럽 사회의 법체제에 기초를 두고 발전하였고 종교개혁을 거쳐 근세적인 개념으로 전개되어 왔다.²⁾ 저항의 중세적 기반은 중세 유럽 사회의 민족법, 봉건법, 교회법 등 세가지의 법체제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³⁾ 이 세가지의 법체제에 기반을 둔 저항권은 주권 재민, 국민 또한 국민의 대표자에 의한 군주권의 제한이라는 근세적인 개념은 없는 것이었다. 중세 초기까지는 볼 수 없었던 이 개념은 중세 말기부터 발전했다. 주권재민이라는 개념은 로마법전의 부흥과 스킴라주의자에 의한 그리스 철학 연구를 통해서 활발해졌고⁴⁾ 국민 또는 국민의 대표자에 의한 군주권의 제한이라는 개념은 교회내에서는 총회지상주의(Conciliarism),⁵⁾ 정치에서는 등족(等族) 국가⁶⁾의 대두와 관련해서 발전했다.

1) 丸山忠孝, 抵抗權—宗教改革思想の考察—テオドール・ド・베ーズ爲政者の權利(1574年)の神學的分析を中心として, 25.

2) Ibid., 26.

3) 1) 民族法: 게르만 민족의 국왕과 국민과의 사이의 지배 복종 관계에 초기의 원형을 볼 수가 있었다. 이 관계로 인하면 국왕은 절대 군주가 아니라 그 지배권은 법질서인 게르만 민족법으로 제한되었다. 국왕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저항권이 인정되었다. 2) 봉건법: 이것은 봉건 영주와 영민(領民) 사이의 상호 충성 관계에 의거한 계약의 성문법이다. 영주가 계약불이행의 경우에는 영민에게는 충성 의무의 해제와 저항권이 인정되었다. 저항의 특정 형식을 가지지 않은 게르만 민족법에 대하여 저항의 형식화가 발전되고 뒤에는 봉건재판소가 저항권 문제를 처리하기에 이르렀다. 3) 교회법: 본장 2의 1) 참조. Ibid., 27.

4) 예를 들어 파드마의 말시리우스(Marcirius)의 평화의 옹호자(Defensor pacis): 여기서는 국민이 궁극적 법치권을 가진다고 해서, 군주의 선택권, 폭정 군주의 면직의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고 한다. Ibid., 28.

II.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저항사상

1. 로마 카톨릭의 교회와 국가관과 저항사상

로마 카톨릭의 교황주의는 세속의 권력이 교회 위에 군림하는 황제교황주의와 오랫동안 싸워 왔다. 교회법 학자들은 성과 속, 곧 교회와 국가의 두개의 열쇠를 다 교황이 가진다고 주장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다.⁷⁾ 그러므로 중세 카톨릭시즘의 교회법에 있는 저항은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 내부(교권, 계급제도)와의 관계 등 양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교회와 국가라는 면에 관해서는 만약 국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거나 이단을 신봉할 경우에는 교회는 국왕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있었다. 또한 국왕의 통치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인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으로서 교회에 의하여 이 통치권의 탈환이 가능하다고 했다.⁸⁾

또 교회 내부의 문제에 있어서 저항권에 관해서는 교회회의지상주의(Conciliarism)의 대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회의 대표자에 의해서 구성된 교회회의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에 우선한다고 하는 교회회의지상주의는 중세 중기의 교회법의 발전에 그 기반을 둔다. 교회회의의 결정으로 교황의 절대권을 제어하고 교황이 이단, 반그리스도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교황 면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5) 본장 2의 1) 참조.

6) 봉건국가에서 직접 또한 대표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계급(성직, 귀족, 서민의 삼계급)을 모체로 하는 등족(等族) 국가에서는 등족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폭정 군주에게 저항권이 있다고 생각했다. Ibid., 28.

7) R. 베인톤, 『宗敎改革史』, 新敎出版社, 260.

8) 丸山忠孝, op. cit., 25.

2. 루터의 저항권 사상

1) 루터의 교회와 국가관

속권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교황주의에 대해서 세속에서의 완전한 분리 혹은 은둔적 생활이 이상이라고 생각한 파는 재세례파(Anabaptist)였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원래 그들은 국가나 속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⁹⁾ 그들은 이 세상에서 평화를 확립하는 일에 완전히 비판적이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교회와 국가의 영역을 극히 명확히 분별하는 것을 요구했다. 그들의 이상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물러나 어느 먼 곳에서 이상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애쓰는 것이었다.¹⁰⁾

루터도 이 세상에서 평화를 확립하는 일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이 점에서는 재세례파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속권으로부터의 명확한 분리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속권은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 지위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며 신앙의 자유를 확보했다. 그리고 과형(課刑) 기능을 가지는 세속적 권력도 속사람은 자유라도 겉사람의 인도자로서 그 존재가 긍정되어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¹¹⁾ 그에게 있어 국가란 사적인 복수를 방지하여 법의 위반자를 처벌하고 불법 상태를 방지하여 평화를 확보하는 임무를 띤다. 이 성속의 왕국과의 관계는 법률이 인간을 죄인으로 고발하여 자기의 양심에 떠는 인간을 즉시 복음 아래로 피난시키고, 그래서 또 오른쪽 의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예언속으로 피난시키는 방법으로 율법과 복음을 서로 병립시켰다.¹²⁾ 즉 하나님께서는 왼손에 속적인 검을 가지고 사람의 죄악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고 오른손의 영적인 검으로 의인(義忍)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속권은 영적인 검을 갖고 있는 교회의 간섭을 받는

9) 하나님의 나라가 출현해서 모든 것은 새롭게 되었으니 국가나 율법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渡邊信夫, 「神と魂と世界と—宗教改革小史」, 白水社, 221.

10) R. 베인톤, *op. cit.*, 255.

11) G. 덴츨러編著, 「教會と國家」, 新教出版社, 103.

12) *ibid.*, 108.

필요는 별로 없다. 이와 같이 어떤 면에서 볼때 방치된 상태의 국가관은 국가 권력을 절대시하는 마키아벨리(Machiaveli)의 절대군주론이나¹³⁾ 독일의 전제주의, 그리고 나치즘에 길을 열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¹⁴⁾

그러나 사실은 루터는 결코 속권에 맹종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 루터가 주장한 중요한 논점은 국가에서의 교회의 완전한 독립과 자유였다. 그래서 루터는 만약 속권이 교회의 영적인 지배의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저항하라고 주장했다.¹⁵⁾

2) 루터의 저항권 사상

루터는 하나님의 왼쪽의 검인 속권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강조했지만 결코 무조건적 복종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속권은 영생에 대한 법을 가지지 않고 있고 그 때문에 성경의 소지를 금지하는 권한조차도 가지지 않기¹⁶⁾ 때문이다. 그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복종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첫째 정부가 신앙에 반하는 것을 명령한 경우 즉, 황제가 교황의 지배자가 될 경우 말만오로의 저항¹⁷⁾을 넘어서 실력으로의 저항해야 한다고 했다.¹⁸⁾ 둘째 정부가 불의의 전쟁을 시작할 경우에는 종군을 거부하는 자

13) Machiaveli(1469-1527): 무도덕적 국가론자이고 군주권을 무제한적으로 긍정했다.

14) R. 베인톤, *op. cit.*, 254-256.

15) 이 경우 왼쪽의 하나님의 왕국은 그대로 세속적통치와 동일시하면 안된다. G. 덴스ラー, *op. cit.*, 103.

16) M. Luther: An die Rathern deutschen Landes, daß sie christliche Schrlen sollen aufrichten, 1524; G. 덴스ラー, *op. cit.*, 114.

17) 교회는 궁극적으로는 세속적 정치 권력을 요구하는 법적 권리를 가지지 않았다. ... 그러나 성직자의 설교는 공공연히 자유롭게 행해져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요구이고 교회는 순교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신앙고백을 위해서 그 요구를 지켜가야 한다. ... 교회에 있어서는 복음의 자유가 유지되어야 한다. *Ibid.*, 115.

18) 정치권력이 타락하면 루터는 자기의 혼을 멸망시키기 전에 한 사람으로라도 선동자(seditiosus)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혹시 집정관이 타락하면 민중이 집정관이 된다. 루터는 저항을 법적으로가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해서 적그리스도자에게서 믿음

세로 저항해야 한다고 했다.¹⁹⁾

그런데 루터는 무력 저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는 처음에는 무력저항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치자가 헌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국내의 제후에 의하여 퇴위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점차 변해갔다. 하위의 위정자가 상위의 위정자의 전제에 대해서 인민을 보호하는 권리를 가지므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²⁰⁾ 이 생각은 후일 칼빈의 저항사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

3. 칼빈의 저항권 사상

칼빈주의는 국가의 개혁을 전망하는 전투적인 신학이었다. 이 사상이 제네바에 들어오자마자 제네바는 도시국가 제네바 그 자체가 그리스도 왕국으로의 변혁을 개시하고, 이 사상이 영국에 들어오자마자 영국 교회의 중용적 종교 개혁에 대한 반발과 저항, 나아가서는 정교도 혁명의 발발을 가져왔다.²¹⁾ 영국 그리고 뉴잉글랜드에서의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기여했다.²²⁾ 이 사상이 프랑스에 들어가자마자 1562년부터 1598년까지 계속된 프랑스 종교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투적인 종교개혁 가운데 칼빈주의의 사상은 독자적으로 전개되어 갔다. 이와같은 칼빈주의의 전투성은 국가전체를 다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개혁해 버리자고 하는 칼빈의 다이내믹한 그리스도 왕국론이며, 무엇보다도 그 핵심은 그의 저항권 사상에 있었다.

그래서 먼저 칼빈의 국가관, 교회와 국가관을 개관하면서 그의 저항권

을 지켜야 하는가란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법률밑에 있는 민중도 통치자가 될 능력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G. 덴스트라, *op. cit.*, 114.

19) 전쟁 자체의 의, 불의는 교회가 아니라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R. 베인톤, *op. cit.*, 257.

20) 루터파가 국교회해 가는 가운데 이 이론의 필요성이 독일에서는 소멸해 버렸다. R. 베인톤, *op. cit.*, 258.

21) W. 우오커, 「宗教改革」, ヨルダン社, 121-143, 113-247.

22) R. 베인톤, 「宗教改革史」, 新教出版社, 252.

사상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칼빈의 국가론

당시 마키아벨리와 같이 국가권력을 절대시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재세례파와 같이 국가권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칼빈은 국가란 교회라는 영적 질서와 병행하여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정당한 질서라고 주장했다. 단 이 질서는 결혼과 같이 창조 질서가 아니가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타락을 억제하기 위해서²³⁾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은혜²⁴⁾의 제도로 보았다. 국가란 원래(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으면 재세례파가 말하는대로 틀림없이) 필요없는 것이지만 그러나(실제로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질서였다. 여기에 칼빈의 독자적인 국가관이 있다. 이것으로 재세례파의 국가무용론은 거부되고 국가 권력을 함부로 시인하려고 하는 국가방임론에도 고삐가 죄이게 되었다.

2) 칼빈의 통치자론

㉠ 통치권의 근원

칼빈은 로마서 13장 1절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란 말씀을 근거로 통치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을 수여받고 신적 권위도 얻었고 완전히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통치자의 통치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라라고 설명한다.²⁵⁾ 주권은 국민과의 계약으로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권리의 위양으로 성립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왕은 그 자체에 뭇가 고유한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종이고 국가를

23) 칼르벤, 『키리스트교綱要』, 新敎出版社, (IV/2), 20章 1 참조.

24) A. 카이버, 『칼르비니즘』, 聖山社, 137.

25) 칼르벤, *op. cit.*, 20章 4절, 234 - 236.

잘 다스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원을 가지는 통치자의 권위는 선량한 통치자의 경우뿐만 아니라 극악 무도한 통치자의 경우도 유효하다고 칼빈은 말했다. 니모데전서 2장 2절의 주해 속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록 그리스도인은 박해하는 나쁜 왕이라도 그 인간들을 보지 말고 또 그들이 지금 의무를 다했을까 안 했을까 란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확립하고 계신 질서에 주목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사악함으로도 파손되지 않고 전면적으로는 없어지지 않고 무엇인가 남아 있는 것이다. 고위에 있는 사람들과 정의의 검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직분을 제대로 다하지 않아도, 또 그들이 하는 것이 아무 직무나 임무가 없는 자들이 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왕국이나 군후령(君侯領)이나 법의 자리에 그들을 세우시고 우리가 평화롭게 생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흠족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²⁶⁾

이와 같이 비록 극악 무도한 왕이라도 그 법적인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 하나님의 권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치자에게의 불복종과 반역은 곧 그 통치자를 세우신 하나님께의 도전이며 신성 모독이다.

⑥ 통치자의 책임

칼빈은 통치자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 유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권위는 조금도 민중에 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책임에 있어서도 통치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직접적으로 민중에 대한 책임은 없다

26) 칼루벤, 니모데전서 22의 주해; D. 나우타, 「칼루벤과 정치」(抄譯), 日本基督教會 靖國神社問題 特別委員會, 16-17.

고 칼빈은 보았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증거의 두 판 전체에 걸치는 것이다.²⁷⁾ 즉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둘째는 인류복지의 증진, 이 두 가지가 바로 그 뜻이다.

첫번째 것에 관해서 말하면 통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와 직무를 부여받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부패하고 또 소멸되고 있을 때 이것을 회복해서²⁸⁾ 우상숭배와 미신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외적 예배를 육성하여 보호하며 경건의 건전한 교리를 가지는 교회의 입장을 지키는²⁹⁾ 것이다. 이와 같은 칼빈의 입장은 종교에 대해서 결코 중립이 아니다. 개혁주의의 존립만을 허락하고 타교파나 타종교의 병존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상에 근거하여 정당한 하나님의 예배를 모독하는 것으로서 이단의 처벌은 통치자의 과제가 되었다.

두번째에 경우에 관해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통치자는 우리의 생활을 인류 사회에 적용시켜 우리의 삶을 시민 사회의 정의에 맞추어 우리를 서로 화해시키며 공공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하는³⁰⁾ 책임이 있다고 칼빈은 말한다. 곧 가난한 자나 빈약한 자에게 정의를 실천해서 궁핍한 자를 해방시키며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확대하는 자들로부터 구출하기 위하여 통치자는 폭력을 억제하고 사회의 평온을 파괴하는 악인이나 범죄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법과 정의를 명함으로써 통치자는 사회속에서 평화와 안녕을 지키는 것이다.³¹⁾

이것을 위해서는 검을 사용하는 권리가 통치자에게 있다고 칼빈은 보았다. 형편에 따라서는 사형도 적용한다는 엄격함이 요구된다고 했다. 하나

27) 칼루반, 「키리스토教綱要」, (Ⅱ/2), (20장 9절), 241.

28) Ibid.

29) Ibid., 20장 2절, 233.

30) Ibid., 20장 2절, 233.

31) Ibid., 242-243.

님의 율법이 살인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왜 통치자에 의한 사형 집행이 정당한가? 이점에 대해서 칼빈은 하나님께로부터의 권위를 위탁받은 통치자가 하나님의 심판, 보복의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한다. 그리고 반대로 흉악한 사람들이 짐을 뽑고 살인과 학살을 보았을 때에 통치자가 짐을 뽑지 않고 자기 손을 피로 더럽히는 일에서 깨끗이 지키고 있다면 최고의 불경건의 죄책을 짓는다고 한다.³²⁾ 그리고 이 논리의 연장선으로 정당한 전쟁(just war)이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곧 통치자가 자기의 왕국의 평화를 지키고 불온한 인간의 반란 충동을 억압해서 폭력으로 탄압받는 이들을 돕고 악을 처벌하기 위하여 권력을 부여받았다고 하면 평화를 파괴하는 대적들에게 대항하고, 다른 나라를 약탈로 괴롭히고 황폐시키는 침략국을 도적으로 간주해서 처벌하는 것은 통치자의 책임이라고 보았다.³³⁾

그러나 여기에는 극도의 신중함이 필요하다.³⁴⁾ 그러므로 통치자는 개인적인 미움의 감정이나 명예욕으로 국토를 확장하려는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³⁵⁾ 그리고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서도 무력에 호소하여 결말을 짓기에 앞서 먼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봐야 한다고 칼빈은 생각했다.

이상과 같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통치자는 살아 있는 법이 되고 때로는 인간으로 인하여 제정된 실정법에 구속되는 필요가 없다고 칼빈은 생각했다. 법은 통치자로 인하여 집행되는 것이다. 통치자가 없으면 법은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32) Ibid., 245.

33) 그것을 위해서 무장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곧 자국의 방위를 위해 세금의 징수도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통치자는 자국내의 평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싸워야 한다고 칼빈은 생각했다. 칼루벤, 로마서 13:4의 訓解; D. 나우타, *op. cit.*, 57.

34) 무기를 가질 때에도 지배자들은 경망스럽게 그것을 사용하면 안된다. 아니 절실한 필요 때문에 무기의 사용이 어쩔 수 없게 될 경우가 아니면 기회를 얻어도 거기에 편승하면 안되며, 자기의 사적 욕망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칼루벤, 「키리스트教綱要」, (IV/2), 247.

35) 칼루벤, 사무엘상 8:11-22의 訓解; D. 나우타, *op. cit.*, 60.

문자만 있는 죽은 것이다. 법을 살아 있는 것으로서 움직이고 사람들이 복종하게 하는 자는 바로 통치자이다. 그 통치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으며, 법과 질서에 스스로 제약되면서도 때로는 인간이 정한 법을 초월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칼빈은 생각했다.³⁶⁾ 이런 통치자로서의 역할의 무거운 책임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넘고 있고 자기 힘으로는 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치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한다.³⁷⁾

㉔ 피통치자의 책임

통치자에 대한 피통치자의 책임은 통치자의 임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최대의 존경심을 가지면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임무 때문에 하나님께 섬기는 자, 즉 사자로서 존경받는 것이다.³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롬 13:1)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피통치자는 통치자를 존경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칼빈의 생각은 통치자가 양식있는 자의 경우에만 적용된 것

36) D. ナウタ, *op. cit.*, 47-48.

37) 모든 당국자 그리고 공무에 취임하고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성경을 읽는 일에 열심하여야 한다. 또한 설교를 들으러 열심히 다니고 이 교리에 대해서 더욱 더 확신을 깊게 하고 이 교리가 잘 교육되도록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사람들 위에 특별하게 높여 주셨으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인도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고 자부해서는 결코 안되고 또 잘난 체해서도 안된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시지 않으면 또 자기들을 인도해 갈 지혜와 지도를 주시지 않으면 자기들은 무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칼빈, 신명기 17:14-18의 註解, D. ナウタ, *op. cit.*, 62-63.

38) 칼빈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다. 그 복종의 자세도 오직 공포심으로 통치자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통치자를 존경할 가치가 있다는 뜻은 그들 각각 인물 자체나 그 인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로서의 일이 그 자체로서 명예와 존경할 가치가 있다고 칼빈은 말했다. 그래서 모든 지배자는 우리들 사이에서 가치가 인정되고 그들의 높은 지위에 관해서 존경을 받아야 한다. 칼빈, 『キリスト教綱要』, IV/2, 257.

이 아니다. 비록 나쁜 통치자라도 마찬가지다.³⁹⁾ 만일 통치자가 폭군이 되고 압정을 행한다면 피통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칼빈은 이와 같은 폭군의 지배를 하나님의 저주의 표시로서 이해한다.⁴⁰⁾ 그래서 폭군으로 고통을 받을 때는 첫째로 자기 자신의 죄과를 생각해야 하고(단 9:7), 둘째는 이런 악을 치료하는 일은 우리의 임무가 아니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잠 21:1)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⁴¹⁾ 통치자에게의 복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섭리로 하시는 일이고⁴²⁾ 피통치자에게는 이 권한이 없다.

칼빈은 여러가지 정치 형태 가운데 군주제를 의문시하였으며 인민중의 최선의 사람들로 인한 시정(施政, 온건한 귀족제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권의 책임을 사람들이 하찮게 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독직 등을 행하는 사람들을 세우면 이것이 야말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⁴³⁾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39) 디모데전서 2장 2절 주해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의 원수,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자, 살인자들,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고 요컨대 진실하고 순수한 종교에 거역해서 치밀어 오르는 당시의 권력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제가 이 진리의 원수들, 복음이 멸망하고 그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각도 없어지라고 원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인가? 참혹하게도 신앙자들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교회에 사멸을 가져오는 역병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 아닌가? 그러나 성 바울은 모든 공권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경우에는 기도하는 자는 그런 면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언명하고 있다. 왜? 우리는 인간을 보면 안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지금 의무를 다하지 않은가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확립하신 질서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들의 사악함으로도 파손되지 않고 적어도 전멸적으로는 없어지지 않고 뭔가가 잔존하는 것이다. ... 뭔가 일정한 선의 흔적이 남는 것이 틀림없다. 칼르벤, 디모데전서 22의 주해; D. 나우타, *op. cit.*, 17.

40) 칼르벤, 「키리스트교綱要」, IV/2, 259.

41) *Ibid.*, 263-264.

42) 어떤 때는 모세와 같은 구출자를 세우시고, 또 어떤 때는 메대 바사 사람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복수하신 일처럼 선민의 원수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수해 주신다고 한다. *Ibid.*, 264.

압정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자기의 모독과 사악이 초래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보는 것이다.⁴³⁾

3) 칼빈의 교회와 국가관

칼빈은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을까? 칼빈은 루터의 국가로부터의 교회의 구별이란 입장을 따르면서도 여기서 진일보하여 이 양자의 완전한 독립을 유지하고 양자는 유기적으로 관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⁴⁴⁾ 이렇게 함으로서 양자의 구별과 각 영역의 독자성을 잃고 있는 교황주의와 재세례파의 입장을 다 물리쳤다. 속권은 정당한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맡겨져 있는 영적인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속권에게 경고하고 교육시켜야 한다. 곧 루터파의 군주들과 같이 교회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는⁴⁵⁾ 것이 아니고 비록 권력자라도 다른 성도들과 똑같이 교회의 지도에 복종하는 것이다.⁴⁷⁾ 그리고 그들이 더 높고 귀한 위치에 있게 해 주니까 그들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큰 의무가 있는 것을 자각해야 하는 것이다.⁴⁸⁾

그러나 이것은 결코 교황주의자와 같이 성직자나 설교자가 속권을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다. 설교자는 세속적 공권에 있어서 무슨 권력이나 권위

43) 칼루안, 신명기 1:9-15 주해, D. 나우타, *op. cit.*, 24.

44) 칼빈은 왕정의 폐해를 심히 강력하게 항의하였는데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우중(愚衆) 정치에 빠질수 있는 위험성을 예견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점에서 근대 민주주의와는 일선(一線)을 긋고 있었다. 어디까지나 그의 이상은 서로 권력을 견제하는 최선의 사람들로 인한 선정이었다.

45) 마치 혼(魂)과 身體와 같이 인체의 두개의 눈과 같이, D. 나우타, *op. cit.*, 64, 68, 70.

46) 그 결과로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루터파의 군주들을 비난하고 있다. 영적으로 방치상태의 군주들의 교만한 상태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는 굉장히 영적이고 교회적 동치 따위는 완전히 존재하지 않은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칼루안, 아모스, 7:13의 주해; D. 나우타, *op. cit.*, 74.

47) *Ibid.*, 72.

48) 루가, 디모데전서 2:1-2의 주해; D. 나우타, *op. cit.*, 77.

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속권이 교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 설교자도 다른 피통치자들과 같이 공권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교회는 영적인 집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국가는 속권의 검을 가지고 서로가 완전한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유기적으로 관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신성정치,⁴⁹⁾ 곧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위에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⁵⁰⁾

4) 칼빈의 저항권 사상

피통치자의 책임이란 항에서 이미 말했지만 칼빈은 악한 통치자는 하나님의 분노와 형벌의 표시라고 보았다. 그래서 압정때에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섭리함으로 폭군에게 복수해 주시는 것을 기도하고 양망해야 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피통치자는 통치자의 권위를 유린하지 않도록 최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⁵¹⁾ 불복종은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요 모독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왕의 하급위정자인 관현에 관해서는 다르다. 이것에 대해서는 왕의 압정을 보고도 못 본 체하면 그것은 오히려 죄라고 보았다. 관현은 하나님의 법으로 민중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

49) D. ナウタ, *op. cit.*, 79.

50) 단 이와 같은 국가와 교회의 유기적 활동의 결과 세르베투스의 화형과 같은 이단의 처형이 실시된 점에 대해서 카이퍼(A. Kuyper)는 다음과 같이 평했다. 이런 역사의 사실은 칼빈주의의 표현이 아니다. 원래 콘스탄틴 대제에 유래하는 오래된 제도의 자취이고 칼빈도 이것을 탈피할 수 없었다는 시대적 제약이 있었다. 그 때문에 나는 이 화형의 사실을 슬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무조건으로 주장한다. (A. 카이퍼, *ibid.*, 163-164).

50) 단 이와 같은 국가와 교회의 유기적 활동의 결과 세르베투스의 화형과 같은 이단의 처형이 실시된 점에 대해서 카이퍼(A. Kuyper)는 다음과 같이 평했다. 이런 역사의 사실은 칼빈주의의 표현이 아니다. 원래 콘스탄틴 대제에 유래하는 오래된 제도의 자취이고 칼빈도 이것을 탈피할 수 없었다는 시대적 제약이 있었다. 그 때문에 나는 이 화형의 사실을 슬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무조건으로 주장한다. (A. 카이퍼, *ibid.*, 163-164).

51) 칼루벤, 「키리스트教綱要」, IV/2, 265.

기 때문이라고 한다.⁵²⁾ 이 점은 루터의 생각을 따르고 있다. 곧 하위의 위정자에게는 당연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상위 통치자에 대한 복종 의무의 예외는 개인에게도 있다. 그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 5:29)란 말씀대로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안된다.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일은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복종한 그 다음의 일이다. 혹시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뭔가를 명령하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다리로나 예로보암과 같은 모독적인 왕은 자기의 분수를 넘어 단지 인간에 대해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해서 뿔을 곤두세워서 자기의 권능을 폐기했다고 칼빈은 말한다.⁵³⁾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과 같이 권력에의 불복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의무이고 피통치자의 책임이다.⁵⁴⁾

그러나 이럴 때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저항은 칼빈에 의하면 정치적 저항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종교적 영역에 남아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다니엘과 같이 명령에의 복종거부, 이것은 때로는 순교의 길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칼빈은 어디까지나 하위의 위정자로 인한 정치적 저항은 인정해도 개인의 정치적 저항은 인정하지 않은 점이다. 왜냐하면 개인이 이 권리를 잡자마자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을 가장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정도라면 폭군이 지배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이었다.⁵⁵⁾ 어쨌든 그 체제안에서의 변혁과 개혁을 생각한 것이다. 완전한 민주주의나 (근본적인) 혁명이란 생각을 칼빈은 명확히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로 있

52) *Ibid.*, 266.

53) *Ibid.*

54) 폭군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합법적 저항은 일종의 의무이고 폭군에 대하여 한도를 넘는 복종이야말로 죄라는 입장은 「基督教綱要」의 최종판(1559년)에서 칼빈이 증명한 부분이다. 丸山忠孝, *op. cit.*, 29.

55) D. ナウタ, *op. cit.*, 17.

었던 그런 활동을 견제하고 있다.

4. 베자의 저항사상

지금까지 살펴본 칼빈의 저항사상은 한번 프랑스로 들어가자마자 1562년부터 1598년까지 계속된 프랑스 종교 전쟁의 이념이 되었고 이 전투적인 종교개혁속에서 칼빈의 저항사상은 칼빈의 계승자인 베자를 통해 더욱 발전되었다. 그는 프랑스의 카톨릭 정부가 칼빈주의자들을 잔학하게 박해하고 있는 현실을 직접 보면서 정치 이론 특히 저항권론과 맞닥뜨렸다. 베자는 칼빈의 저항사상을 충실하게 계승하면서도 프란스란 특수한 곳에서 그것을 독특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개시켰다.

베자의 저작인 「위정자의 권리」(*Du droit de magistrats*, 1574년)는 본래 「위정자의 신민에 대한 권리와 신민의 위정자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작품이다. 이 기본적인 원고는 1572년 8월 24일 소위 성 바돌로매의 날의 대 학살의 다음 해 초엽에는 벌써 완성되고 있었다. 이 내용이 성 바돌로매의 날의 대 학살후의 프랑스에 큰 충격을 줄 것을 예상하여 그는 이것을 익명으로 간행했다.⁵⁶⁾ 베자는 이것을 제네바에서 출판하고 싶었지만 프랑스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염려하는 시당국이 혼란과 곤란을 초래한다고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⁵⁷⁾ 그만큼 전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인용의 80%를 구신약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 저작에서는 성 바돌로매의 날을 계기로 저항권 사상은 더욱 더 전개되었고 이를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한 것이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마루야마(丸山忠孝) 박사의 요약에 따라 그 내용의 전체를 개관하고

56) 丸山忠孝, *op. cit.*, 31.

57) 프랑스와의 외교관계의 악화를 염려해서 진리가 틀림없지만 현재 이것을 출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혼란과 곤란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1573년의 제네바사회 기록)고 하여 시정부가 출판을 불허했다. 그래서 그는 Heidelberg에서 이것을 인쇄해서 리옹에서 간행했다. 下. 베즈, 「抵抗權の源泉」, 日本基督教會靖國神社出版部特別委員會, 解題

자 한다.⁵⁸⁾

1) 하나님께의 복종과 위정자에게의 복종

더할 나위 없이 위대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그 모든 의의 불변의 규범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우리는 예외없이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께만 절대적인 복종에 비하면 위정자에게의 복종은 상대적이고 조건부이어야만 한다. 위정자에게의 복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건’⁵⁹⁾과 ‘사랑’⁶⁰⁾이란 두가지로 제한된다. 위정자가 비종교적 부도덕적인 일을 강제하지 않은 동안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위정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위정자의 명령이 분명히 비종교적이고 부도덕적이고 경건과 사랑의 한도를 넘는 일을 강요한 경우에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나라(행 5:29)는 교훈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2) 복종과 저항의 판단기준

어디까지 복종하고 어디서 저항해야 할까란 판단기준은 각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란 저울에 달아보아야 한다. 만일 의문을 남기는 명령이라면 그 의문이 없어질 때까지 그 명령을 해명해야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롬 14:23).

3) 불법으로 불경건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 한도 Studies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일을 위정자가 명령할 경우에는⁶¹⁾ 위정자에게

58) 이하 丸山忠孝, *op. cit.*, p. 31-39 참조; F. 베즈, *op. cit.*, 참조. 본 요약에서 원저자의 (h), (i)항은 생략함.

59) *piete*: 십계명의 첫째의 증거판(제 1-4계명)이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나타낸다.

60) *charite*: 도덕 또한 십계명의 둘째의 증거판(제 5-10계명)이며, 사람에게 대한 책임을 나타낸다.

61)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찌니란 하나님의 율법에 반해서 위정자가 살인을 요구할 때.

의 복종을 거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위정자가 금지할 경우에는⁶²⁾ 위정자에게의 복종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의 복종의 실천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능동적 저항의 가능성이 있다.

4) 하급위 정자, 상급위정자와 저항

하급위정자 (권력을 가지지 않은)가 개인을 압박할 경우에는 개인은 상급위정자에게 상소를 통해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그리고 적정하게 저항할 수 있다. 하급위정자가 다른 하급위정자를 폭력으로 압박할 경우에는 노헤미야의 예(노헤미야 4)처럼 압박받는 쪽은 (모든 평화적인 수단을 다하고 나서) 법에 따라 무력 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급 위정자 자신이 폭정에 빠진 경우 주 예수와 순교자의 무저항의 길 이외에도 합법적 저항이 가능하다.

5) 주권재민과 상급위정자

주권재민을 선언: 군주의 권위는 인민의 합의에 의해 특정한 조건하에서 통치 권한이 맡겨져 있다.⁶³⁾ 인민은 공권직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인민은 공권직보다도 옛날부터 창조되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공권직은 인민을 위해서 만들어 내게 된 것이다. 그것은 보호자가 고아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고아가 보호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⁶⁴⁾

상급위정자를 1) 합법적으로 통치권을 얻은 군주와 2) 황령이나 타영지 침입이란 비합법적 수단으로 통치권을 찬탈한 군주로 구별할 수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하급의 위정자나 개인도 다 자국의 합법적 제도를 옹호하기 위해서 저항권을 가진다.⁶⁵⁾ 특히 신앙의 자유가 문제가 될 때에는

62) 예를 들어 가서 전하라(마 28:19)란 주 예수의 명령을 위정자가 방해할 때.

63) 이 점은 중세의 저항권론이 이미 도달한 원칙이며 본서의 선구적인 (법률학자) 프랑소아 오토만의 「프랑코 가리아」(Francogallia, 1573)가 프랑스 민족법 연구에서 실증한 것이었다. 丸山忠教氏, *op. cit.*, 34.

64) D. 베즈, *op. cit.*, 12.

이 저항권은 그리스도인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가 된다.

6) 합법적 군주에 대한 저항권

저항의 핵심은 찬탈, 침략 폭군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통치권을 획득한 군주가 폭군으로 화한 경우에 있다. 그 경우 개인에게는 원칙으로서 저항권은 없다.⁶⁶⁾ 그러나 예외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인을 세우셔서 폭군에게의 저항을 허락할 경우도 있다. 하위의 위정자에게는 저항권이 있다.⁶⁷⁾ 단지 이 권리를 행사할 때도 그것이 모반이나 동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고려가 필요하다. 무력저항은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다하고 난 이후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수단이다. 게다가 무력저항할 때에도 자기 방위와 법적 질서 회복과의 한계내에서만 가능하다.

상급위정자 가운데 군주가 아닌 의회의 의원들은 가장 유효하게 저항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인민은 군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군주가 인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들의 임무는 주권자를 그 책무에 머물게 해서 필요하면 감시하에 두거나 강제하는 것이다.⁶⁸⁾ 이와 같은 인민의 권리를 대표하는 상급위정자의 저항은 고대 국가, 16세기 국가, 그리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왕정의 범례를 볼 수 있다.⁶⁹⁾

65) 군주의 통치권은 주권자인 인민의 합의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그런 합의없이 권력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복종의 의무가 없는 것이다.

66) 왜냐하면 합법적 군주는 인민과의 계약으로 통치권을 확보하였으므로 군주가 폭군이 된 이유만으로는 저항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면 폭정보다 더 무서운 천의 폭군, 무정부 상태를 도래시킬 결과를 불러 일으킨다. 그는 밖으로 이주하거나 하나님 밑으로 피할 수밖에 없다.

67) 그들은 시장, 경찰장관, 시의회의원 ... 이들은 비록 상관 밑에 있어서... 그들에서 임명을 받아도 주권 자체에 속하고 있다. 곧 주권 또한 지배의 최고의 *δουμης*와 권위에 소속하고 있다. 상관의 죽음을 만나도 그들은 이전부터의 자기의 직능에 머물다. 주권 그 자체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D. 베즈, *op. cit.*, 27.

68) D. 베즈, *op. cit.*, 35.

69) 고대 세계의 로마, 아테네 등의 정치 체제에서 16세기의 덴마크, 스웨덴, 스코틀랜드, 영국, 스페인, 신성 로마 제국(7選帝侯), 프랑스(삼부회) 등의 많은 범례에서도 지지된다. 구약 왕정하의 이스라엘에서는 왕은 이중의 계약으로 구속되었다. 먼저 왕

7) 폭정과 폭정 제어 기관

폭군이 너무 강해져서 앞에서 말한대로 폭정 제어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이 방해되고 있을 경우는 어떻게? 개인으로는 원칙으로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인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침착한 판단을 가지는 개인이 하위의 위정자와 힘을 합해서 저항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그 나라의 동맹국에게 원병을 청하는 것 등의 수단으로 폭군에게의 저항이 가능하다.⁷⁰⁾

8) 종교상의 이유로 인한 박해에 대한 저항

이상의 저항권 일반에 관한 결론은 종교적인 박해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첫째 종교는 양심의 영역에 대한 문제이고 무력이 강제되어야 하는 성질이 아니며 또한 종교의 이름으로 무력저항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⁷¹⁾ 이점에 대한 배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종교와 정치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완전히 분리되서는 안한다. 이 세상의 재산은 무력으로 지킬 수 있고 종교적인 문제로 무력을 쓸 수 있다. 반대로 위정자의 주요한 의무는 치안 유지 이외 참된 종교의 보호

과 신민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왕은 신민과 상호의무의 계약을 맺었다. 그 때문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신민의 지도자와 공모해서 왕위 찬탈자 아달라 여왕에게 저항해서 여왕을 살해하고 다윗 직계의 왕자 요아스를 왕위에 앉혔다(왕하 11장).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 왕 아마샤는 예루살렘 인민의 공적 권한의 저항으로 인해서 살해되었다(왕하 14:19-21). 이렇게 볼 때 곧 이스라엘의 모든 신민에는 다윗의 집에서 한 명의 왕을 고르는 권리가 있고 이 왕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리도 있고 또한 어떤 일인가에 따라 처벌하는 권리도 있었던 것이다. D. 베어즈, *op. cit.*, 48.

70) 단 다음의 세가지가 전제되고 있다. i) 폭정이 공공연한 사실일 경우 ii) 무기의 사용은 다른 모든 가능한 수단을 강구해 본 후의 가장 최종적 수단일 것, iii) 유익한 수단을 충분히 고려한 이후일 것.

71) 종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와 인내와 기도로 전진한다. 여기에 영적인 왕국과 이 세상의 왕국의 구별을 가르치는 성경, 또 그 위에 충실한 예언자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범이 첨가된다. 이 분에게는 모든 권력이 주어졌지만 폭력의 수단은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사도도 순교자도 마찬가지였다. D. 베어즈, *op. cit.*, 98.

에 있다.⁷²⁾ 그러므로 그는 정의의 방법이나 무기의 방법을 발휘해서 참된 종교에 혼란과 분규를 초래하는 자들에게 대항해야 한다고 했다.⁷³⁾

둘째 (참된 종교의 보호가 본래의 직무인) 위정자가 오히려 종교를 박해하여 시민들에게 우상숭배를 강요 한 경우에 관해서 배자는 두가지 경우를 구별해서 생각한다.

곧 참된 종교를 보호하는 법률(종교의 자유) 이 제정되기 전과, 제정된 후⁷⁴⁾ 유지, 옹호해야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⁷⁵⁾ 시민들의 양심이 강요를 받고 우상숭배가 강요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주군에게 공공의 질서를 변경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틀림없다. 그 때문에 그들은 인내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러나 후자와 같이 법률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면서도 위정자가 참된 종교를 박해하여 성도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할 경우에는 준법의무의 불이행이란 이유로 위정자는 폭군으로 간주되며 (f)항에서 말한 합법적 주군에 대한 저항의 구분에 따라 저항권이 성립한다. 우리의 영혼과 양심은 다른 어떤 재화보다도 가치가 높고 이것에는 더욱더 근거가 필요하다. 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예언자도 사도도 그 외의 순교자들도 개인으로서의 한계를 지키면서 그 사명에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공인들에 관해서는 두가지 답을 줄 수가 있다. 그것은 이미 말한 저항을 행사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이다.⁷⁶⁾

72) 바른 공직권의 주요한 의무는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자기에게 주신 모든 수단을 통해 하나님만이 왕들의 왕으로서 인식되고 섬김을 받도록 자기에게 맡겨진 피동치자로 하여금 실행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D. 베즈 *op. cit.*, 98.

73) *Ibid.*

74) 참된 종교에 힘쓰는 것을 승인하는 협정, 법 혹은 명령이 합법적으로 제정되어 공권력으로 확정했다. *Ibid.*, 102.

75) 어떤 나라에 한 종교를 정착시키는 원동력은 오직 성령이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고 권고한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수단을 수반한 성령의 진정한 사역이다. 그 때문에 군주가 피동치자 등을 우상숭배나 미신에서 참된 종교로 되돌아오게 하려면 그 군주의 책무는 진실하고 확실한 논의로 교육시키는 것이다. *Ibid.*, 102.

76) (이 공인들가운데는) 지휘관과 한 군단이 다같이 전혀 저항하지 않았고 순교한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여기서 나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저항하지 않고 인내만으로 진리를 박해자의 압정에게 이긴 사람들을 순교자로 간주할뿐만 아니라, 충분히 법과 권능으로 참된 종교의 옹호를 맡는 사람들도 순교자로 간주한다.⁷⁷⁾

이상에서 살펴 본 베자의 저항권사상은 기본적으로는 칼빈의 저항권사상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칼빈보다 진일보하여 적극적으로 저항권사상을 전개시키고 있다. 이것은 이미 말했지만 극히 어려운 프랑스의 종교개혁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절박한 상황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그는 칼빈의 이론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이론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칼빈의 저항권 사상과 비교해서 베자의 이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국가에 대한 복종과 저항의 규범을 양심에 둔 점이다. 이것은 칼빈의 사상의 계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칼빈은 율법에 대해서 논했을 때 이신득의를 논한 부분에서 양심론을 전개했다. 또 양심의 자유의 이론과 관련해서 국가 질서를 논했다.⁷⁸⁾ 베자는 위에 있는 권위에의 복종에 있어서 양심론을 전개했다. 모든 신앙으로 인하지 않은 것은 죄라며 신앙 양심이 만족하지 않은 복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양심론을 전개한 것이다. 단 그가 말하는 양심이란 오늘날 같이 단지 도덕적인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베자를 비롯한 16세기의 칼빈주의자들은 양심을 종교(경건)의 영역에 직접 관계시키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예도 있었다. 그것은 박해자 등이 기독교신자의 입장을 인정한 협정을 어겼는데 특히 디오크레티아누스와 율리아누스 때에는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는데, 첫째로 디오크레티아누스 이전의 ... 몇명의 황제는 박해를 완화했지만 기독교공인은 하지 않았다. 둘째로 대충 허가되고 있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협정으로 합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옹호될 필요는 없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한 수단을 주신 권한이 있는 사람의 부동의 양심으로 실시될 뿐이다. D. 베즈, *op. cit.*, 103-104.

77) *Ibid.*, 104.

78) 渡邊信夫, 「神と魂と世界と—宗教改革小史」, 白水社, 230.

베자는 저항권의 문제를 단순한 도덕적, 정치적인 차원에서 더 근원적인 신앙적 행위의 차원까지 높인 것이다.⁷⁹⁾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원적이고 거룩한 경건의 영역에 직접 관계되는 양심에서 저항권문제를 생각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가 말한 양심이란 의미를 신중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적해야 하는 점은 베자가 저항론을 인민 쪽에 서서 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민은 공권적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인민은 공권적보다도 앞서 창조되어 있고 공권적은 인민을 위해서 만들어 지게 된 것이다. 인민은 군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가 인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베자는 대담하게 주권재민을 선언했다. 칼빈에서의 군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서 유래한 것이었고 인민에게서는 유래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저항권을 논할 때도 인민의 권리때문에 군주권이 제한된다고는 전개하지 않았다. 칼빈에서는 억제되고 있었던 이 한계선을 베자는 넘은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 베자가 당시 참신하고 과격한 그의 저항권론⁸⁰⁾을 전개할 때 극히 신중하게 합법성과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그리스도인의 저항론은 세속의 인간중심적인 저항주의를 배제해야 한다.⁸¹⁾ 이것이 모든 시대의 기독교의 저항운동을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점이다. 틀림없이 저항의 최종결단의 자리는 개인의 양심이었지만 저항권의 문제를 칼빈주의자의 개혁운동 전체의 차원까지 높이었을 때 합법성과 질서의 강조가 필요했다. 교회의 저항 운동은 유포피아니즘이나 공리주의나 또 교회를 떠난 개인 단위의 과격주의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 된 유기

79) 丸山忠孝, *op. cit.*, 40.

80) 16세기 사회에서는 이와 같이 과격한 주권재민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丸山忠孝, *op. cit.*, 41.

81) 칼비니스트의 저항론은 뮌스터(Münster)의 폭도와 같이 이상향을 바라는 과격주의와, 저항 운동에서는 편리하므로 채용해야 한다는 식의 공리주의를 배제해야 한다. 丸山忠孝, *op. cit.*, 41.

적 공동체에 기초를 둔다.⁸²⁾

마지막으로 베자의 이론의 현대적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베자가 이상과 같은 저항사상을 구축한 정신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베자가 처한 역사적 현실 곧, 프랑스 정부로 인한 신교도 박해라는 상황이었다. 천주교라는 우상 종교가 강요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심각한 탄압을 받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군주가 우리의 부모를 죽이고 자매들이나 여자들을 욕보이고,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시키고 빼앗게 하고 죽이게 하고 게다가 한 백성이 이러한 군주의 경건함을 의지해서 아무런 조건도 두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는 구실하에 이 모든 일을 하기까지에 이른다면 어디에서 시정하면 좋은가?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⁸³⁾ 라는 한계상황이 현실로 눈앞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냉엄한 현실속에서 베자는 저항권을 교회의 사활 문제로서 파악했다.⁸⁴⁾ 이것은 앞에서 본 루터와 칼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이후에는 국가주의(Nationalism)가 대두하므로 국가가 절대화해 가는⁸⁵⁾ 근현대에 있어서는 국가는 교회를 끌어들이고, 국가가 교회를 이용하기도 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사조에 휩쓸려서 국가주의화 되어가는 위협이 항상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살아 남기 위하여 국가와 타협, 협력하게 되거나 국가에게 이용되게 된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 대전기의 미국이 그랬고⁸⁶⁾ 제2차 세계 대전시의 나치 독일이 그랬다. 그리고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면도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82) 丸山忠孝, *op. cit.*, 41.

83) *Ibid.*, 69.

84) 丸山忠孝, *op. cit.*, 42.

85) 丸山忠孝, 「キリスト教會 2000年」, いのちのことば社, 197-203.

86) 미국이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함으로써 미국의 내셔널리즘이 정점에 이른 제1차 세계 대전 때에 교회도 애국적 경향이 더욱더 강해지고 적극적으로 전쟁에 협력하는 교회지도자가 압도적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빌리 선데이(Billy Sunday)는 기독교와 애국주의는 동의어로 간주하였고, 지옥과 배신자는 동의어라고 했다. 미국 전체는 물론 복음주의의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곧 기독교회가 국가의 내셔널리즘에 굴



후에 살펴 볼 일본 제국도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교회를 이용하려고 했다. 그래서 정교(政敎) 분리란 생각이 철저하지 않으면 벌써 국가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신앙의 자유, 신앙의 신성불가침성의 가장 명확한 주장이 이 저항권 사상이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복해 갔다(*Eerdmans Handbook to Christianity in America*,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368ff.).